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859호 2024. 8. 5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—— 1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4호 도시관리계획(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·열람 ————— 3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6호 도시관리계획(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·열람 ————— 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9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————— 10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-155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8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13번길 28-1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4.8.5.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4-8-5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9-1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13번길 28-1 (대곡동)	20130730	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3,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-1584호

도시관리계획(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8. 5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I. 도시관리계획(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조서

-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-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(변경)
 - 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 - 나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)
 - 공공·문화체육시설
 -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					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				변경	변경 후						
			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	
계			2개소	10,747.0	-	-	10,747.0	-		3,028.0	-	-	3,028.0	-		
1	문화 시설	문화 시설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14	7,719.0	-	-	7,719.0	-	감7,719.0	-	-	-	-	-	'07.11.6	폐지
2	문화 시설	문화 시설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13	3,028.0	-	-	3,028.0	-		3,028.0	-	-	3,028.0	-	'16.12.19	

·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문화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폐지 - 면적: 7,719.0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지내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폐지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(변경)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)

- 문화시설용지(변경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위 치	획 지										비 고
				면적(㎡)										
				기정					변경					
			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계	-	10,747.0	-	10,747.0	-	-	10,747.0	-	10,747.0	-	-	10,747.0	-	
G	G1	4,419.0	원창동 514	7,719.0	-	-	7,719.0	-	4,419.0	-	-	4,419.0	-	
	G3	3,300.0	원창동 514	-	-	-	-	-	3,300.0	-	-	3,300.0	-	
	G2	3,028.0	원창동 513	3,028.0	-	-	3,028.0	-	3,028.0	-	-	3,028.0	-	

-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가구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G	G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G1 가구 분할 - G1(면적: 7,719㎡)⇒ G1(면적: 4,419㎡) G3(면적: 3,300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 복지관 및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을 위하여 G1가구를 G1(장애인복지관), G3(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)로 분할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4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

-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Ⅲ. 열람 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032-560-6872, 서구 서곶로 307)

Ⅳ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의견서

일시	2024. . .
성명	
주소	※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연락처	※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도시계획 변경사항	도시관리계획(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
의견사항	
※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	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-1586호

도시관리계획(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
2024. 8. 5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I. 도시관리계획(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조서

- 1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-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- 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■ 지원시설용지(P)(변경)

가구	면적	획지				비고
		위치	면적	위치	면적	
P3 (지원시설)	8,596.7	1	4,235.1	1	2,645.0	1획지 → 1,3획지
				3	1,590.1	
		2	4,361.6	2	4,361.6	

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 번호	기정		변경		변경사유
	위치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
P3	3	837.5	3-1	414.5	○ 획지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			3-2	423.0	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: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III. 열람 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032-560-6873, 서구 서곶로 307)

IV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)

의견서

일시	2024. . .
성명	
주소	※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연락처	※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도시계획 변경사항	도시관리계획(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지구단위 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
의견사항	
※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	

인천광역시 서구 제2024-1592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08. 05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공 고 기 간 : 2024. 08. 05. ~ 2024. 08. 20.(16일간)

2. 공 고 내 용

1. 행정처분 제목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인천2고5162 등 16건(붙임 참조)		
	차 명			
3. 운행정지사유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적근거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1, FAX 032-560-2793)		

3. 유 의 사 항

- 1)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2)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- 3)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(무등록 자동차)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4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1)

■ [붙임]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인천2고5162	엘란트라	박**	2024.07.04
2	19모1181	S350 L	케**	2024.07.08
3	03무3681	S8	박**	2024.07.15
4	351거8850	Mercedes-Benz E450 4MATIC Coupe	케**	2024.07.16
5	60루5402	레인지로버 이보크 TD4	케**	2024.07.17
6	119수9720	K3	심**	2024.07.18
7	151우3833	Mercedes-Benz S580 4MATIC	하**	2024.07.19
8	252러3599	Mercedes-Benz CLS450 4MATIC	하**	2024.07.23
9	09러2459	SM6	박**	2024.07.23
10	03너9107	렉서스 ES300h	하**	2024.07.24
11	384러9222	Mercedes-Benz S400 d 4MATIC	하**	2024.07.25
12	25부7051	S350 d 4Matic	강**	2024.07.25
13	18부5005	레인지로버 스포츠	김**	2024.07.26
14	13서7007	Mercedes-AMG CLS63 4Matic	이**	2024.07.29
15	대전32마1905	칼로스1.5SOHC	정**	2024.07.31
16	92너8445	대우25톤카고트럭	이**	2024.07.31